#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

발의연월일: 2024. 5. 31.

발 의 자: 정청래·강준현·한민수

양문석 • 정진욱 • 김병주

임오경 · 김동아 · 이원택

신영대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언론 관련 민사 원고승소율이 38.2%에 불과했음. 2009년~2018년까지 언론 관련 민사 1심판결 중 원고승소율 역시 49.31%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 고,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8.37%로 거의 뒤집히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음.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39.74%에 불 과한 실정임.

또한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정보도 · 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,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지나치게 짧아 해당 청구 기한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, 정정보도 · 반론보도의 효과도 피해를 회복하기에 미미한 수준이어서 보완이 필요함.

미국의 경우 위법성, 의도성,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 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음.

이에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, 정정보도·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,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, 정정보도, 반론보도, 추후보도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고자 함(안 제14조제1항, 제15조제3항, 제16조제1항, 제17조제2항, 제18조제7항 및 제30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1항 본문 중 "3개월"을 "1년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6개월"을 "2년"으로 한다.

제15조제3항 본문 중 "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·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, 그"를 "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그"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있다"를 "있으며, 언론사등이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반론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 다"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"한다"를 "하고,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방송하거나 게재되어야 한다"로 한다.

제1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중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손해배상 책임) ① 법원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제30조제1 항에 따른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

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 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서 "악의적"이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보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정정보도·반론보도 청구의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
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도된 언론보도등부터 적용한

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정정보도 청구의 요건) ①	제14조(정정보도 청구의 요건) ①
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	
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	
하여 피해를 입은 자(이하 "피	
해자"라 한다)는 해당 언론보	
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<u>3개</u>	<u>1년</u>
월 이내에 언론사, 인터넷뉴스	
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	
미디어 방송사업자(이하 "언론	
사등"이라 한다)에게 그 언론	
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	
도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해	
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<u>6개</u>	<u>2년</u>
<u>월</u> 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	
아니하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)	제15조(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)
①・② (생 략)	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	③
수용할 때에는 <u>지체 없이 피해</u>	<u>원 보도의 지</u>
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	<u>면 및 분량으로 그</u>
의 내용・크기 등에 관하여 협	
<u>의한 후, 그</u> 청구를 받은 날부	

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(인터넷신문 및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신문 및 잡지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.

#### ④ ~ ⑧ (생 략)

제16조(반론보도청구권) ① 사실 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 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 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<u>있다</u>.

#### ②·③ (생 략)

- 제17조(추후보도청구권) ① (생략)
  - ②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

	④ ~ ⑧ (현행과 같음)
제	16조(반론보도청구권) ①
	<u>있으며,</u>
	언론사등이 청구를 수용할 때에
	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
	반론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
	하여야 한다.
-3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	17조(추후보도청구권) ① (현행
	과 같음)
	②

되어야 한다.

③ • ④ (생 략)

제18조(조정신청) ① ~ ⑥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- -----<u>하고, 원 보도의 지면</u> 및 분량으로 방송하거나 게재되 <u>어야 한다</u>.
- ③ ④ (현행과 같음)
- 제18조(조정신청) ① ~ ⑥ (현행 과 같음)
  - ① 중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신 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.
- 제30조의2(손해배상 책임) ① 법원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제3 0조제1항에 따른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의 3배를 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서 "악의적"이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보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.